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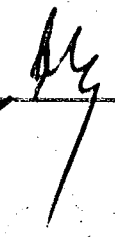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1810

시행일자 1996. 10. 9.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필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정기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출발처 143 호

첨부 훈령안 각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령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43호.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공원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10. 15.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43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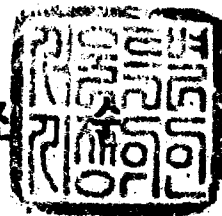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

1. 제정이유

공원녹지확충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공원녹지사업소의 기구를 축소하고
우리시 분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직제 개정에
앞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환경기획관의 소관에 속한 환경·공원·녹지 업무를, 환경기획관은
환경업무에 관하여, 공원녹지기획관요원은 공원·녹지·조경업무에 관하
여, 조경과장요원은 조경업무에 관하여 환경관리실장을 보좌토록 함.

나. 현행 공원 및 녹지분야의 분장사무를 공원·녹지 및 조경분야의 사무로
세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직제규칙제3조, 제14조 및 제9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제3조, 제14조 및 제93조에 의한
환경관리실 소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분장) 환경관리실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획관은 환경업무에 관하여 환경관리실장을 보좌한다.
2. 공원녹지기획관 요원은 공원·녹지·조경 업무에 관하여 환경관리실장을 보좌한다.
3. 조경과장 요원은 조경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78-0681 / 전송 778-0684
 처리부서 : 공원과(중구 을지로별관 2층) 담당 : 오 순 환

문서번호 공원58215-1030

시행일자 1996.10.07

수신 법무담당관

선결	법무담당관 		지	
접	일자	1996.10.07.	시	
수	번호	1814	결	인제계정 281
	처리과		재	
	담당자		공	
			함	

제목 훈령 발령 의뢰

공원녹지확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첨과 같이 제정한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훈령)을 발령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훈령) 방침사본 1부.
 2.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사무분장규정(훈령) 5부. 끝.

공 원

공과장 

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 '96년 1월 직제개편에 따라 전결권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시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심.국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계를 확립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불합리한 전결권을 상항 36건, 하항 48건을 조정하고 조직개편등으로 619건을 신설하였으며 25건은 업무를 통폐합하고 국장중 '96년 1월 직제개편으로,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기술심의관을 추가함.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법령으로 사무 위탁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